

**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** (제95조제2항제1호 관련)

1.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 및 특별자치도의 본청 청사

구 분		기 준 면 적
특별시		127,402m <sup>2</sup>
광역시	인구 3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	68,333m <sup>2</sup>
	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	52,784m <sup>2</sup>
	인구 200만명 미만	37,563m <sup>2</sup>
특별자치시		35,383m <sup>2</sup>
도	경기도	77,633m <sup>2</sup>
	인구 300만명 이상 400만명 미만	44,974m <sup>2</sup>
	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	43,376m <sup>2</sup>
	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	39,089m <sup>2</sup>
특별자치도		32,223m <sup>2</sup>

2. 시, 군 및 자치구의 본청 청사

구 분		기 준 면 적	
시	인구 10만명 미만	11,893m <sup>2</sup>	
	인구 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	13,965m <sup>2</sup>	
	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	17,759m <sup>2</sup>	
	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	18,907m <sup>2</sup>	
	인구 50만명 이상 70만명 미만	19,098m <sup>2</sup>	
	인구 70만명 이상 90만명 미만	20,214m <sup>2</sup>	
	인구 9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	21,968m <sup>2</sup>	
	인구 100만명 이상	22,319m <sup>2</sup>	
군	도의 군	인구 3만명 미만	7,525m <sup>2</sup>
		인구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	8,385m <sup>2</sup>
		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	9,406m <sup>2</sup>
		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	11,829m <sup>2</sup>
		인구 15만명 이상	13,582m <sup>2</sup>
	광역시의 군	인구 10만명 미만	11,861m <sup>2</sup>
		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	12,020m <sup>2</sup>
		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	14,061m <sup>2</sup>
자치구	특별시의 자치구	인구 50만명 미만	26,368m <sup>2</sup>
		인구 50만명 이상	27,484m <sup>2</sup>
	광역시의 자치구	인구 10만명 미만	11,861m <sup>2</sup>
		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	12,020m <sup>2</sup>
		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	14,061m <sup>2</sup>
		인구 50만명 이상	18,206m <sup>2</sup>

비고

1.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,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.
  - 가. 지하주차장·주차시설 등에 사용되는 면적

나. 도서관, 청소년활동시설 등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면적

다. 재난상황실, 직장어린이집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면적

라.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·수익허가를 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·수익하는 면적

2. 제1호에 따라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